



# 교육복지안전망 '꿈꾸는 아이, 희망지원 네트워크' 사업 업 무 협 약 서

경상남도교육청, 경상남도가족센터, 경상남도사회복지관협회,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는 가족돌봄아동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『경상남도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』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【목적】

본 협약은 네 기관이 가족돌봄아동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진입 지원을 위한 『경상남도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』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【기본원칙】

네 기관은 상대 기관의 업무와 규정을 존중하고,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.

## 제3조 【협력사항】

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한다.

### 1. 경상남도교육청

- 가. 가족돌봄아동 사례발굴, 자원 및 서비스 연계
- 나. 가족돌봄아동 사례관리 대상학생 지역사회 연계·협력

### 2. 경상남도가족센터

- 가. 가족돌봄아동 사례발굴, 사례관리, 자원 및 서비스 연계
- 나. 가족돌봄아동 후원금 집행 및 관리
- 다. 가족돌봄아동 지역사회 협력 사업 추진

### 3. 경상남도사회복지관협회

- 가. 가족돌봄아동 사례발굴, 사례관리, 자원 및 서비스 연계
- 나. 가족돌봄아동 후원금 집행 및 관리
- 다. 가족돌봄아동 지역사회 협력 사업 추진



#### 4.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

- 가.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후원금 지원
- 나. 후원자 개발 및 후원금 관리
- 다.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

#### 제4조 【비밀유지】

네 기관은 상호 업무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취득한 정보를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5조 【협의 변경 등】

네 기관은 이 협약 내용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호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제6조 【효력 및 협약 기간】

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,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본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고,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7월 10일



경상남도교육감

박종훈



경상남도가족센터장

정연희



경상남도  
사회복지관협회장

정민화



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
경남후원회 회장

정영식